



붙임 1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장비 담당 점검자 김명준 
 ■ 확인자 : 승인 119안전센터장 임영운 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승인119안전센터	INOCOM (SCA680GC)	201603	0054KM195	현장대응단 M15-01 (2018.7.9.)

근거규정 (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. 별표 7.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7호 가항 4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6개월마다(21.3.9./청 지침) 새로운 공기로 교체	적	
7호 가항 6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적	
7호 가항 7)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적	
8호 가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적	
8호 다항. 3)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적	
9호 나항 및 다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적	
11호 가항 4)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적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적	

※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(20개) 후 작성 보관

※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(센터장·구조대장 등)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